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규남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632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3월 31일

발 의 자: 김규남, 강석주, 고광민,
김영철, 김용호, 김원태,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박춘선, 이희원,
최민규 의원(16명)

1. 제안이유

- 풍납토성 인근지역은 문화유산 규제로 인해 주민들이 재산권을 침해 받아왔고, 개발이 어려운 탓에 슬럼화 되어 정부의 정책·재정적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임.
- 특히 서울시는 이주대책 마련을 위해 2019년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추진하였으나, 본인 소유의 집을 내놓고 전세를 받는다는 불합리한 보상 형태에 단 한 세대도 이주하지 않았고 2025년 지금까지 합리적인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음.
- 특별분양권 등에 대한 형태의 풍납동 지역에 특별주택공급을 희망하는 주민분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지만 서울시는 형평성과 시의 일관된 주택정책 유지라는 이유로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국가정책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에 대한 대책마련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었음.
- 또한 서울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24호다목 등은 전통문화의 보존과 관리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면 특별공급을 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실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추진을 거부하고 있어 기준이 필요한 시점임.

- 이에 풍납토성 인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택에 대해 이주가 필요한 주민들의 특별공급을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신속하고 합리적인 이주대책을 마련하여 주민과 문화유산이 공생하는 환경을 만들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풍납토성 보존으로 재산권 피해를 받은 인근 주민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사항을 신설함(안 제8조 3항)
- 나.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및 공급기준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8조 4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풍납토성 보존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인근 지역주민을
이주대책으로 활용되는 주택에 한하여 특별공급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기준 및 공급 방식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주택이 아닌 특별분양권 형태로 공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이주대책 등) ①·② (생략) <u><신 설></u>	제8조(이주대책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시장은 풍납토성 보존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인근 지역주민을 이주대책으로 활용되는 주택에 한하여 특별공급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u> <u>④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기준 및 공급 방식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주택이 아닌 특별분양권 형태로 공급할 수 있다.</u>
<u><신 설></u>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8조 (이주대책 등)제3항 및 제4항에 풍납토성 인근 지역 주민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관한 사안을 규정¹⁾한 것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 병 준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 계 분 석 관 손 제 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주택의 공급방법)제1항에 따르면 주택의 공급방법은 일반공급,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으로 구분되며, 현재로서는 해당규정에 따른 특별공급 시 전체 공급물량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여 직접적인 서울시 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통상 공급형태에 의한 공공기관 수익성 저하 등과 같은 간접적이고 장기적인 재정부담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으나, 현 시점에서 수집가능한 정보로는 이를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고려사항에서 제외함